정보자료 장애인 교육 표준

나의 자녀 옹호하기: 유아기

본 책자는 장애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정보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기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를 옹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자료는 장애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호주 장애 아동 및 청소년(CYDA)의 도움을 받아 고안하였습니다.

자료 소개

본 자료는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본 자료는 장애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호주 장애 아동 및 청소년(CYDA,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의 도움을 받아 고안하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전역의 전통적 소유자들과 토착민들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토지와 물, 지역사회와 이들 간의 지속적인 연결성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그들과 그들의 과거 및 현재 장로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적, 영적 교육적 관습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언어 관련 참고사항

본 자료에는 인칭 우선 언어(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동)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많이 사람들은 진단 우선 언어(예: '장애아')을 선호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용어에 대한 깊은 역사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합당한 조정**' 또는 '조정',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은 본 자료에서 교차 사용됩니다. '**합당한 조정**'은 *장애 차별 금지법 1992*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본 자료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아동을 뜻하는 말로 '여러분의 자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본 자료는 여러 자료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이지 리드 및 오슬란, 여러 다른 언어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

해당 자료들은 호주 정부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내용 참조: 본 정보 자료에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예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라이프라인(Lifeline)에 13 11 14번으로 전화하거나 0477 13 11 14번으로 문자를 보내십시오.

본 정보자료의 대상

여러분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보자료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부모이거나 보호자일 수 있습니다.

본 정보자료의 목적

본 정보자료는 조기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즉,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논의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누릴 권리가 있는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도록 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을 대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종일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가정집 보육 서비스, 보육원과 유치원들입니다.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장애 아동의 권리는 호주 법에 근거한 법적 권한입니다.

본 자료는 방과 전후 시간에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

본 정보자료는:

- 여러분의 자녀를 옹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 조기 교육 및 보육서비스 업체와 이야기할 때에 유용한 키워드와 제안사항을 드립니다.
- 조기 교육 및 보육서비스에 자녀를 등록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호주 장애 차별 금지법 (2쪽)
- 해당 법이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4쪽)
- 권리 및 책임 (4쪽)
- 조기 교육 및 보육서비스 선택 시 질문할 사항들 (6쪽)
- 추가 정보 및 지원 (7쪽)

호주 장애 차별 금지법

호주의 모든 장애 아동은 *장애 차별 금지법 199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갈 때에 DDA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종일 운영되는 어린이집과 가정집 보육서비스, 유치원과 보육원이 포함됩니다.

정의: 장애 차별 금지법 1992 (DDA)

DDA 법은 호주의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유치원과 보육원에는 *장애인 교육 표준 2005*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 DSE*)이 적용됩니다. DSE 표준은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 업체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DSE 표준이 보육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의: 장애인 교육 표준 2005 (DSE)

본 표준(DSE)은 장애인 차별금지법(DDA)의 하위 법입니다. 이는 교육 제공자들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장애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 제공자들이 이들을 지원, 보호하기 위해 실행할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DDA 법과 DSE 표준에 따라 장애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동급생들과 동일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 합당한 조정을 받습니다.
- 괴롭힘과 부당한 희생으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 교육 표준 설명 자료의 부당한 대우 방지하기 부분을 참조하세요.)

정의: 합당한 조정

조정이란 변화 또는 조치를 말합니다. 조기 교육 서비스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들이 동급생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조정은 장애 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은 사람과 물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합당하면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업체는 일반적으로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변경을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 부당한 어려움

부당한 어려움이란 서비스 업체가 실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조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정으로 인해 부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서비스 업체의 몫입니다. 보호자와 가족들은 그 무엇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관계자 모두(예: 여러분의 자녀, 서비스 업체, 교육자, 동급생들)에게 해당 변경이 미치는 긍정적 도는 부정적인 영향
- 해당 장애가 귀하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서비스 업체의 재정 상황 (예: 서비스 업체가 재정 지원이나 기타 다른 형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조정에 드는 예상 가격).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 교육 기준 설명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를 가진 여러분의 자녀는 비장애 아동과 다음에 있어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등록합니다.
- 동급생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배웁니다.

그들은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권리와 책임

DDA 법 또는 DSE 표준이 적용되려면 자녀가 진단을 받아야만 하나요?

DDA 법 또는 DSE 표준에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DDA 법 또는 DSE 표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합당한 조정을 하여 지원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에 동의하기 위해 진단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료 전문가로부터 레터(또는 유사한 형식)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업체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조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업체가 나의 자녀를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업체는 일반적으로 장애 때문에 아동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동급생들과 다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업체에 등록
-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업체에 참여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업체가 장애 아동을 받는 수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현재 여러분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들은 반드시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부당한 어려움 참조 (3쪽))

제가 합당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합당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아동이 실용조직역동표시(Pragmatic Organisation Dynamic Display, PODD) 책을 이용하여 소통을 합니다. 아동의 선생님은 책을 사용하여 아동을 돕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필요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프로그램과 액티비티의 모든 부분에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같은 방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가 함께 놀지 못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식사하기와 화장실 이용하기 등과 같이 아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서비스에 업체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이는 합당한 조정의 형태입니다.

서비스 업체가 '의료 지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급식 튜브나 호흡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업체에게 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도와줄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DDA 법에 따라 장애 아동이 보호받는 법과 서비스 업체가 그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호주 인권 위원회의 DDA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선택 시 질문할 사항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서비스 업체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업체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할 목록을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다양성과 다름, 장애에 대해 서비스 업체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 그들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그들이** 나의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그들의 가치관과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서비스 업체는 그들만의 '운영 철학(statement of philosophy)'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 **직원들은 업무에 있어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따르는가?**
- **그들이 나의 자녀를 알아가고 돕고 아이에 대해 배우기 위해 나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그들은 어떻게 합당한 조정을 마련할 것인가(필요 시)?
- **기타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서비스 업체의 직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서비스 업체의 웹사이트 등과 같은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나 보호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각 질문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 업체를 찾는지 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지원

- *장애인 교육 표준 200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05L00767)
- *장애 차별 금지법199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 C2018C00125)
- 장애 호주 허브(https://www.disabilityaustraliahub.com.au/) – 장애 관련 기관 목록
- 장애 게이트웨이 (https://disabilitygateway.gov.au/education/early-childhood) – 조기 교육 관련한 서비스와 지원, 정보에 대한 링크
- 호주 정부의 교육부 (https://www.education. gov.au/early-childhood)
-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조기 교육 및 보육 서비스 (https://www.startingblocks.gov.au)
- 육아 네트워크 (https://www.raisingchildren.net.au) – 육아/보육 관련 정보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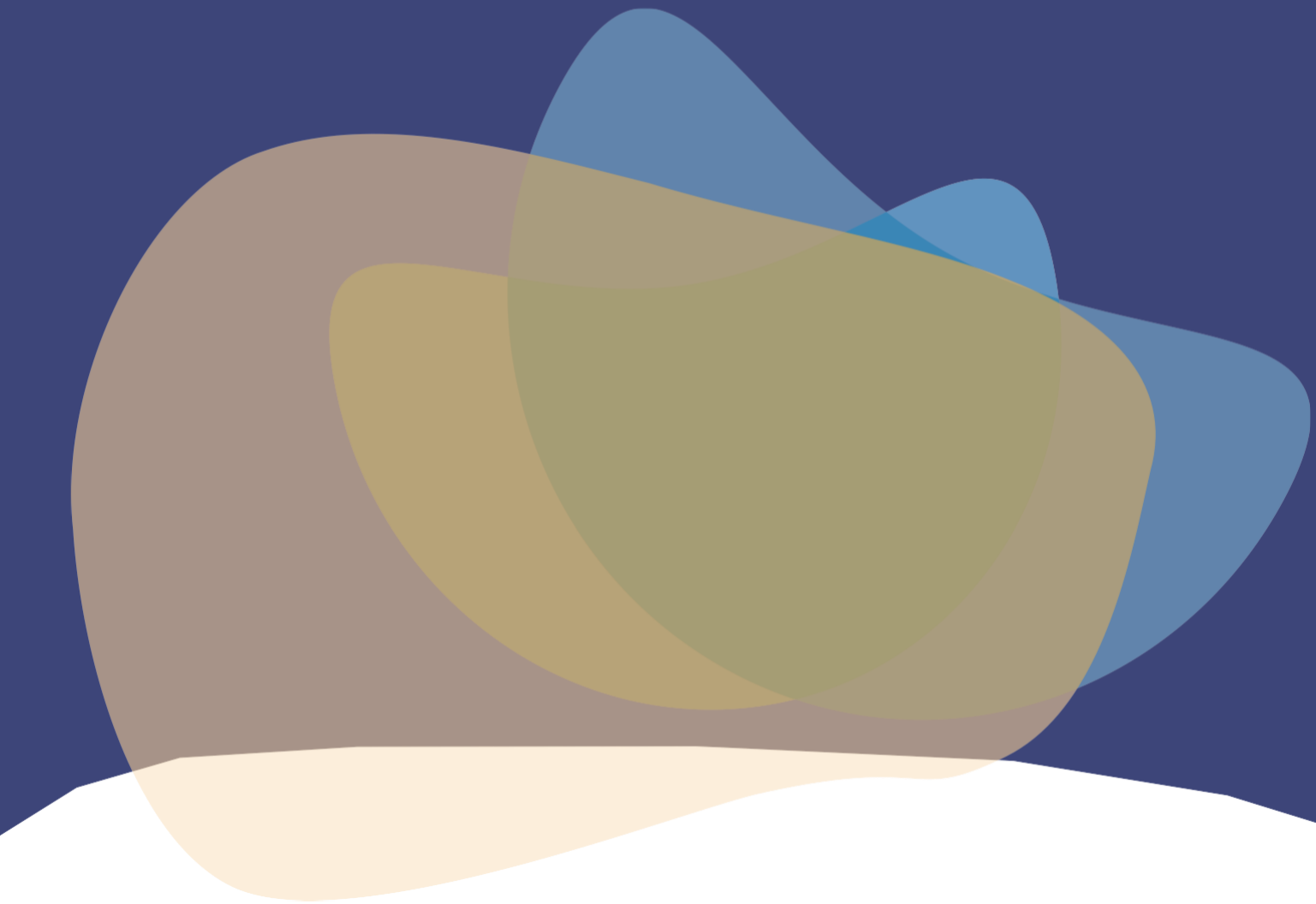

www.education.gov.au/disability-standards-education-2005